



#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

수신 인터넷 쇼핑몰 대표자  
(경유)

제목 통신판매업체의 가공식품 유기·무농약 표시·광고에 대한 협조 요청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유기·무농약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가공식품의 경우 "유기", "무농약", "친환경"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가 불가합니다.  
※동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행위 금지
3. 이에 따라 귀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입점 또는 링크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체에서 인증품(유기가공식품, 무농약원료가공식품)이 아닌 제품을 "유기" 또는 "무농약" 식품으로 광고를 노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.

< 온라인 쇼핑몰의 가공식품 유기·무농약 표시·광고 방법 >

□ 인증 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

⇒ 친환경 인증과 관련된 모든 표시·광고 및 이와 유사한 표시·광고 불가

※ "유기", "무농약", "친환경" 문구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,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표시 불가

□ 인증 받은 원료를 사용하였으나, 유기(무농약원료)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

⇒ 인증로고, 제품명, 제품별 메인화면에 유기(무농약) 문구 표시·광고 불가, 상세설명 화면에 유기(무농약) 문구를 원료별 함량과 함께 표시 가능

※ 전체 원료가 유기(무농약) 이라는 의미의 표시·광고는 금지

□ 유기가공식품,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받은 가공식품

⇒ 인증로고, 제품별 주 메인화면에 유기·무농약 문구 표시·광고 가능

끝.

